

의안
번호

271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4. 17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271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4. 5.

라. 회부일자 : 2024. 4. 11.

2. 제안이유

- 위기 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지원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긴급복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기준 구체화(안 제3조제1, 10, 11, 12호)
- 나.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문 정비(안 제3조제8, 10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긴급복지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4. 02. 29. ~ 2024. 03. 20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위기 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확대 및 신속지원을 위한 조문을 정비하여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안 제3조제1호는 ‘입원환자’를 ‘가구구성원의 입원’으로 변경하고 후단에 ‘간병·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’를 명시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가구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. 그러나, ‘가구구성원의 입원’은 ‘행위를 지칭하고 있는바, ‘간병·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지칭하도록 ‘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’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사료 됨.

< 수정안 >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1. <u>가구구성원의 입원</u> , 치매 노인, 알콜 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,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	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1. <u>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</u> , 치매 노인, 알콜 중독자,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,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

- 안 제3조제10호, 제11호, 제12호는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제7호1)에서 정한 소득 상실의 위기 상황의 사유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‘실직·폐업 등’의 사유를 추가하여 위기 사유 발생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함.
- 안 제3조제8호는 맞춤형 급여 신청 후 급여 결정 전 ‘동 복지협의체 사례 분과 회의를 통해’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‘동장의 추천’으로 변경하고, 안 제3조제10호의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‘1개월 이상 수도 등 공급중단 시기를 삭제한 것으로, 긴급복지 지원의 기본원칙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치한 것으로 보이나, 공급중단 시기 삭제 시 체납만으로 위기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, 공급 중단이라는 위기상황을 명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<수정안>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10. 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<u>수도,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</u>	제3조(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) 10. 실직·폐업 등의 사유로 <u>생계가 어려워 수도,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</u>

□ **종합의견**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,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1)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위기상황”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.

7.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8.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9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